



산림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

1. 관련 : 「목재이용법」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2020. 1. 9.)
2. 법령 개정에 따른 목재산업분야 업무내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목재 생산업 및 목재등급평가사 등록관리에 적용하시기 바라며, 소속기관 및 시·군·구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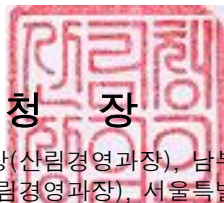
< 주요 개정사항 >

구 분	개정 前	개정 後
① 제재업 제2종 등록기준	(자본금) 1억원 이상 (인력) 2인 - 임산가공기사, 임산가공산업기사 각 1인	(자본금) 5천만원 이상 (인력) 2인 - 임산가공기능사 2인 또는 - 임산가공기능사 1인 및 35시간 교육 이수자 1인
② 목재생산업 실적 보고	월 1회 제출	분기별 1회 제출
③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	-	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추가

붙임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1부. 끝.



산 림 청 장



수신자 북부지방산림청장(산림경영과장), 동부지방산림청장(산림경영과장), 남부지방산림청장(산림경영과장), 중부지방산림청장(산림경영과장), 서부지방산림청장(산림경영과장), 서울특별시(자연생태과장), 부산광역시(산림생태과장), 대구광역시(공원녹지과장), 인천광역시(녹지정책과장), 광주광역시(공원녹지과장), 대전광역시(공원녹지과장), 울산광역시(녹지공원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산림공원과장), 경기도지사(산림과장), 강원도지사(산림소득과장), 충청북도지사(산림녹지과장), 충청남도지사(산림자원과장), 전라북도지사(산림녹지과장),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(산림보전과장), 경상북도지사(산림자원과장), 경상남도지사(산림녹지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산림휴양과장)

행정사무관 **유상아** 주무관 **마윤호** 목재산업과장 **이종수** 2020.1.29.

협조자

시행 목재산업과-460 (2020. 1. 29.) 접수

우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목재산업과,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 1동 산림청 / <http://www.forest.go.kr>

전화번호 042-481-8875 팩스번호 042-471-1446 / tkddk1221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"남과 북이 함께, 숲으로 하나되는 한반도"